

II - 46	제 목	등록기준 미달업체와의 승계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3년 7월 12일	회신방법	산자부 전력57300-546
의 요 지			
질의1) 등록기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기준신고를 하지 않은 피승계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춘 승계업체로 승계신고를 할 경우 접수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승계신고하여 승계처리가 완료된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피승계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이 승계인에 승계되는지?			
회 신 내 용			
답변1)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지 못하도록 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에서도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행정처분 계류 중인 민원사무에 대하여 특별히 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바,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행정절차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사자(피승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